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결산개요

가. 세입결산

- 예산액 7억 3,314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0억 1,499만원, 수납액은 5억 3,145만원, 미수납액은 4억 8,354만원임.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127억 8,435만원으로, 122억 6,323만원을 지출하고, 2억 1,85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54만원임.

3. 결산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액 7억 3,314만원에 대하여, 10억 1,49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3,145만원을 수납하고, 4억 8,354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주요 세입징수결정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지난연도 수입, 국고보조금 등 10억 1,499만원임.

〈 세 입 결 산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비 고
733,141	1,014,986 (138.4%)	531,446 (52.4%)	483,539 (47.6%)	-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세출예산현액은 127억 8,435만원이며, 이중 122억 6,323만원을 지출하고, 2억 1,858만원은 사고이월하여 3억 254만원이 불용으로 남음.

〈 세 출 결 산 〉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12,688,096	96,254	12,784,350	12,263,228	218,584 (1.7%)	302,538 (2.4%)

(2)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27억 8,435만원 대비 2.4%인 3억 25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이 3억 154만원으로 99.7%,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백만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음.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합계	12,784,350	302,538 (2.4%)	1,000 (0.3%)	301,538 (99.7%)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해당사항 없음.
- 이 체: 해당사항 없음.
- 변경사용: 1건, 6,000만원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예비비지출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2건, 2억 1,858만원
- 예비비 지출: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7억 3,314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0억 1,499만원 이고, 징수결정액의 52.4%에 해당하는 5억 3,145만원을 수납 하였고, 미수납액은 47.6%인 4억 8,354만원임.

〈주요 항목별 세입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상 세 내 역
합 계	733,141	1,014,986	531,446	483,539	-
재산입대 수 입	202,593	189,806	189,806	-	수납액 - 서소문 본관 및 남서울미술관 카페, 아트숍 : 106,107천원 - 북서울미술관 카페, 아트숍 : 45,517천원 - 북서울미술관 레스토랑 : 38,182천원
사 용 료 수 입	337,819	315,682	315,682	-	수납액 - 서소문 본관 세마홀,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커뮤니티 갤러리, 세마창고 사용료 : 9,954천원 - 서소문 본관 주차요금수입 : 257,091천원 - 북서울미술관 주차요금수입 : 48,637천원
사업수입	180,815	-	-	-	-
이자수입	565	719	719	-	수납액 - 공금통장 발생이자 : 719
기타수입	11,349	10,189	10,189	-	수납액 - 임대사업장 및 세마시설 공공요금 등 : 10,189
자난연도 수 입	-	483,540	-	483,539	〈미수납액〉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1,306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 :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체납 : 474,083천원
국고 보조금	-	15,050	15,050	-	수납액 - 2017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 미수납액 4억 8,354만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항목별로는 지난연도수입이 100%임.

〈미수납액 세부내역 및 사유〉

(단위 : 천원)

항 목	미수납액	상 세 내 역
합 계	483,539	
지난연도수입	483,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 1,306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체납: 474,083천원

-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4억 8,354만원은 2012년 발생한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과 2014년 발생한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체납임.
- **뮤지엄숍 임대료 미수납액**은 2012년도에 뮤지엄숍 임대계약자 (주)밀레21이 미납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2015년까지 임대료 원금(4,516만원) 및 가산금 일부(159만원)는 징수하였으나, 체납 임대료에 대한 가산금 815만원은 미납되었음.

서울시립미술관은 독촉고지, 주소지 방문 등 징수활동을 진행하였으나 대표자가 주소지에 미거주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배당을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배당 후순위인 관계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본 건은 향후 지속적인 재산조회 후 실익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당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5년(2021.9.30.) 후 소멸시효가 완성됨.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수납액**은 서울시립미술관이 2014년 3월 3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¹⁾ 가입 후 공제회비를 선납부하고, 2014년 9월 11일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업체에 부과·고지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아 130만원이 체납된 것임.

2015년 6월 서울시립미술관은 체납자의 주소지에 따라 강남구청에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압류의뢰를 하였고, 현재 제1순위 채권자가 자동차 매각 실시 이후 배당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 가능성이 낮음.

이는 2014년 3월 시립미술관이 공제회비를 선납부한 6개월 이후 임대업체에게 부과·고지하기까지 행정처리가 너무 늦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2014년 7월 3일 이미 임대업체에서 운영권 중도포기를 신청하였으므로 미납이 예견된 사안이었음.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문 및 지연손해금 미수납액**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주관기획사인 (주)지엔티컬처의 약정을 통해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한국-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특별전: 기적의 미술관’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기획사측에서 전시 개막 1주일을 남기고 개최 불가를 통보함.

개최 불가로 인해 시립미술관은 공공미술관으로서 시민들과의 신뢰를 크게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되어 (주)지엔티컬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년 5월 22일 일부 승소함에 따른 소송 판결금 및 소송비용 총 체납액이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4억 7,408만원임.

1) 영조물배상공제 : 공공시설물과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보상금,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등을 보상 보장범위로 함.

〈상파울루 전시관련 체납 내역〉

체 납 자	체 납 액	체 납 내 용
(주) 지엔티컬처	474,082,594원	
	16,985,300원	5% 지연손해금('12.12.11~'14.5.22)
	216,562,434원	20% 지연손해금('14.5.23~'18.12.31)
	234,834,730원	원금
	5,700,130원	소송비용

(주)지엔티컬처는 전시기획,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하다 2013년에 폐업처리 되었으며, 법인은 2016.12.6.일자로 해산간주 상태임.
(2019.12.6. 해산 예정)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차례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법인 및 대표자의 재산이 없으며, 사업장 폐업과 당해 법인도 현재 해산 간주 상태이므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임.

38세금징수과 자문결과, 현 법인은 사업장 폐업 및 법인 해산 간주 상태에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하며, 대표자가 법인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불납결손 처리한 후 사후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하여 더 이상 체납징수할 가망이 없어 2019.3.19. 체납세액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하였음.

〈상파울루 전시관련 미납건 징수활동 현황〉

징수활동 일자	징수활동 내용	비 고
2016. 8월, 11월 2017. 5월	독촉고지	
2016. 6월, 8월	재산조회	
2016. 6월 2017. 5월,6월,8월,11월 2018. 2월	대표자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	
2016. 10월 2017. 4월	채무자 재산명시결정 및 각하	채무자 부재로 결정문 송달불가
2018.1.26	주민등록 말소 의뢰 및 재등록	체납법인의 대표자 거주지 파악
2018.4.24	주민등록지 조사	2013.6.30. 사업자 폐업

〈최근 3년 세입금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항 목	미수납액	상세내역
2018	합계	483,539	
	지난연도수입	483,539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6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474,083천원
2017	합계	436,573	
	지난연도수입	436,573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6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427,116천원
2016	합계	390,773	
	사용료수입	1,167	- 사용료 납부기한 미도래 1,167천원('17.1월 완납)
	기타수입	5,700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비용 5,700천원
	지난연도수입	383,906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6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374,449천원

- 시립미술관은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 기획사 선정 시 신용도가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 할 것임.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서울시립미술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7억 8,435만원으로 122억 6,323만원을 지출하고, 2억 1,85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54만원임.

〈 세 출 결 산 〉

(단위 : 천원)

년도별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8년	12,688,096	-	96,254	12,784,350	12,263,228	218,584	302,538 (2.4%)
2017년	11,980,145	-	-	11,980,145	11,238,817	96,255	645,073 (5.4%)
2016년	12,403,405	-	24,087	12,427,492	11,972,192	-	455,300 (3.7%)

(2) 집행잔액

- 집행잔액 3억 254만원은 예산액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17년 불용률인 5.4%에 비해 감소하였고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 2.3%와 유사한 수준임.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이 3억 154만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인 99.7%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0.3%인 1백만원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합계	12,784,350	302,538	301,538 (99.7%)	1,000 (0.3%)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 및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주요 불용사유
총계		12,784,350	12,263,228	218,583	302,538	2.4	
1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722,600	1,712,604		9,996	0.6	집행잔액
2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1,343,850	1,337,552		6,298	0.5	집행잔액
3	소장작품 상설전시	117,220	116,205		1,015	0.9	집행잔액
4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1,789,000	1,718,029		70,971	4.0	집행잔액
5	미술소통 프로젝트	68,480	68,165		315	0.5	집행잔액
6	예술가 길드 운영	150,000	139,001		10,999	7.3	집행잔액
7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99,650	97,642		2,008	2.0	집행잔액
8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	35,000	35,000		0	0.0	집행잔액
9	서울사진축제	344,000	230,226	113,212	562	0.2	집행잔액
10	SeMA벙커(여의도지하벙커)운영	100,000	93,466		6,534	6.5	집행잔액
1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국제화 추진)	242,500	239,438		3,062	1.3	집행잔액
12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81,980	180,922		1,058	0.6	집행잔액
13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92,660	91,620		1,040	1.1	집행잔액
14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302,881	286,851		16,029	5.3	집행잔액
15	북서울미술관 홍보강화	79,000	78,983		17	0.0	집행잔액
16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78,922	167,176		11,746	6.6	집행잔액
17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5,700	14,910		790	5.0	집행잔액
18	학예연구 역량강화	120,497	119,630		867	0.7	집행잔액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용률 (%)	주요 불용사유
19	북서울미술관 아트도서실 운영	24,000	23,958		42	0.2	집행잔액
20	시민큐레이터 운영	115,750	114,954		796	0.7	집행잔액
21	미술창작아뜰리에 (모두의학교내)운영	20,000	18,968		1,032	5.2	집행사유 미발생
22	북서울미술관 지역문화행사	100,760	100,760		0	0.0	집행잔액
23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1,600,000	1,593,200		6,800	0.4	집행잔액
24	소장작품 보존관리	200,000	188,811		11,189	5.6	집행잔액
25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804,075	1,586,564	105,371	112,140	6.2	집행잔액
26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687,093	678,886		8,207	1.2	집행잔액
27	기본경비	1,231,767	1,212,742		19,025	1.5	집행잔액
28	국고보조금 반환	16,965	16,965		0	0.0	집행잔액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억 1,214만원,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7,097만원, 기본경비 1,902만원,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1,602만원등임.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 또는 1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용률(%)
1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804,075	1,586,564	105,371	112,140	6.2
2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	1,789,000	1,718,029	-	70,971	4.0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집행잔액(예산현액 18억 408만원 중 1억 1,214만원)은 통계목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81만원, ‘공공운영비’ 4,759만원 등임.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현액 4억 617만원 중 3억 6,336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 대비 10.5%에 해당하는 4,281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퇴직자 발생에 대비하여 근로자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정된 퇴직자 외에 퇴직자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임.

-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집행잔액(예산현액 17억 8,900만원 중 7,097만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91만원, ‘행사운영비’ 1,005만원이 남은 것임.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현액 3억 4,554만원 중 2억 8,463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 대비 17.6%에 해당하는 6,091만원 불용되었는데, 이는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또한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4억 2,045만원 중 14억 1,039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1,005만원이 불용되었음.

(3)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해당사항 없음.
- 이 체: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은 2018년도 총 1건, 6,000만원으로 당초 예술가길드 사업은 SeMA창고에서 3일간 행사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최 장소에 포함되었던 남서울미술관 개최 취소로 전시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3일간 행사가 남서울미술관에서의 30일간 전시형식으로 변경 운영되었음.

〈예산변경현황〉

(단위 : 천원)

변경전			변경후			예산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SeMA병커(여의도지하병커)운영	사무관리비	60,000	예술가길드운영	사무관리비	60,000	전시장 누수로 인해 하반기 전시회개최불가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시립미술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2건, 2억 1,858만원으로 세부사업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 및 ‘서울사진축제’ 중 “행사운영비”에서 발행함.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71,749	1,118,784	105,371	47,593
서울사진축제	행사운영비	342,000	228,228	113,212	560
계		1,613,749	1,347,012	218,583	48,153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2억 7,175만원 중 11억 1,878만원(87.9%)을 집행하고, 8.2%에 해당하는 1억 537만원을 사고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은 3.7%인 4,759만원으로 시립미술관 본관 및 남서울미술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 중 에너지 효율화 등급변경(조달청)으로 해당 제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음.

- 〈한묵:또 하나의 시(詩) 질서를 위하여〉전 진행 중 1층 전시장 내 단열불량으로 작품에 낙수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작품을 긴급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또한 천정 마감재 노후로 인한 탈락, 추락으로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한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서울사진축제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4,200만원 중 2억 2,823만원(66.7%)을 집행하고, 33.1%에 해당하는 1억 1,321만원을 사고이월 함으로써 집행잔액은 0.2%인 56만원임. 사고이월의 주요 발생사유는 서울사진축제 사업의 경우 2019.2.10. 전시가 종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일부가 이월되었음.

(5) 기타사항

- 2018년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제10회를 맞이하여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국제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로 공식 행사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및 서울로미디어캠퍼스에서 개최하였음.
- ‘공동감독’ 선정으로 집단지성을 통한 새로운 실험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은 진행과정에서 선임한 6인의 콜렉티브 중 2인이 중도에 사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전시회 진행에 차질을 빚었음.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시의 시정 사업이자 미술관의 핵심사업인 만큼 2020년 성공적 추진을 위해 더욱 다층적인 콘텐츠 확보와 다양한 다수의 시민 관람객에게 행사가 노출될 수 있는 장(場)을 형성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앞으로 다년간의 기획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연간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시의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 과정과 결과가 문화정책 기반 마련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책사업의 결과 분석과 평가는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업 수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과정을 가시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뮤지엄숍 임대료 징수활동 현황

- ◆ 2012. 04. 20 뮤지엄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부과
- ◆ 2012. 05. 15 사용료 분할 납부 요청(밀레21 ⇒ 미술관)
- ◆ 2012. 05. 20 분할 납부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미술관 ⇒ 밀레21)
⇒ 경영악화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못함.
- ◆ 2012. 06. 19 뮤지엄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 2012. 09. 14 뮤지엄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 2012. 11. 19 뮤지엄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 2012. 11. 21 임대료 일부 납부(18,181,820원)
- ◆ 2013. 02. 04 뮤지엄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 2013. 02. 18 계약기간 45일 단축으로 시유재산임대료 감액(7,150,320원)
- ◆ 2013. 05. 23 뮤지엄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 2013. 07. 26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최종)
- ◆ 2013. 08. 29 업체 방문(밀레21)
- ◆ 2013. 09. 03 이행(지급)보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
- ◆ 2013. 09. 13 재산 및 차량 조회
- ◆ 2013. 09. 27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지급(11,449,606원)
- ◆ 2013. 09. 30 차량 압류 촉탁 의뢰(강남구, 송파구 압류)
- ◆ 2013. 11. 02 임대료 일부 납부(11,449,600원)
- ◆ 2013. 11. 12 가압류 신청을 위한 자료 요구((주) 코엑스)
- ◆ 2013. 12. 19 채권압류 조치(압류금액 26,131천원, 씨티은행)
- ◆ 2014. 04. 01 뮤지엄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 2014. 04. 22 사업자의 각종 채권 및 자산보유현황 제출요청(회신없음)
- ◆ 2014. 08. 14 임대료 일부 납부(8,115,520원)
- ◆ 2014. 12. 26 임대료 일부 납부(5,000,000원)
- ◆ 2015. 01. 14 임대료 일부 납부(4,000,000원)
- ◆ 2015. 05. 19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밀레21 직원 양원국 수령
(대표이사 박형근 대표 2015. 5. 31일까지 완납약속)
- ◆ 2015. 06. 16 압류 예고 및 채권, 임대보증금 확인 차 밀레21 사무실 직접 방문 하였으나
사무실 비어있음, 코엑스 측에서 6월 5일 밀레21 강제퇴거 조치하였음
- ◆ 2015. 09. 17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밀레21 직원 양원국 수령
- ◆ 2016. 05. 10 임대료 등 시유재산 특별징수 계획 수립
- ◆ 2016. 05. 17 세외수입시스템상 임대료 체납징수를 위한 기초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일치여부 확인
- ◆ 2016. 06. 09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 2016. 0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배당기일 통지 접수
- ◆ 2016. 08. 29 채권계산서 제출 (배당신청)
- ◆ 2016. 09. 30 배당표등본 통보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금 없음)
- ◆ 2017. 03. 28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 2017. 04. 19 사업체 법인 주소지 방문 (미거주)
- ◆ 2018. 05. 03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로 주소지 확인(서울 송파구 법원로6길 7)
- ◆ 2018. 06. 19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시효결손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붙임 2. (주)지엔티컬처에 대한 징수활동 : 2019.3.19. 불납결손

- 채권 가압류('14.2.11)
 - (주) 지엔티컬처(원고)와 MBC(피고)간 손해배상 소송시 손해배상액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 항소기각('14.12.5)으로 종결됨
- 채무자 재산명시 결정 및 각하('16.10.31, '17.4.28)
 - 채무자 (주) 지엔티컬처의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자,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불능으로 각하됨
- 채무자(대표자) 주민등록 말소 의뢰하여 거주지 파악
 - 채무자 (주) 지엔티컬처 대표자의 실제 거주지 파악을 위하여 주민등록지(비산3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말소 의뢰('17.9.7)
 -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18.1.26. 현거주지로 재등록)
-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납부 고지서 발송 : 6회
 - '14.6.24, '14.8.20, '15.5.6, '16.8.12, '16.11.8, '17.5.15
- 재산조회 의뢰(토지관리과, 택시물류과) : 6회
〈조회결과 “재산없음”, “법적 조회 근거 없음”〉
 - '14.6.30, '15.4.21, '15.6.12, '15.9.11, '16.6.13, '16.8.9
-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4회
 - '14.7.1, '14.9.2, '15.5.22, '16.8.12
- (주) 지엔티컬처 대표자 주소지 방문 : 7회 〈거주 안함〉
 - '15.6.1, '15.10.7, '17.5.8, '17.6.19, '17.8.18, '17.11.8, '18.2.13
- (주)지엔티컬처 사업장 방문 : 2회 〈사업장 이전, 등기부 주소 이전안함〉
 - '15.6.4, '16.6.14
-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4팀 방문, 징수방안 자문 : 수회
 - 체납사업장 및 대표자의 재산상황(보유재산 무) 및 거주지 관련 자료를 제공받음
 - ※ 38세금징수과는 매년 시본청 소관 세외수입 1백만원 이상 체납분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를 하고 있으나, 사업소 소관 세외수입은 사업소장 등에게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이관은 불가함

※ 불납결손

-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 내지 유보하는 것임
- 불납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함(징수권 소멸은 아님)

※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붙임 3.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제회비 체납 징수활동 현황

□ 공제회비 체납 징수관련 현황

- '14. 09. 11 공제회비 부과(1,306,960원)
- '14. 11. 27 공제회비 납부 독촉고지(1차)
- '15. 03. 06 공제회비 납부 독촉고지(2차) 및 소유차량 압류예고
- '15. 06. 19 체납자 관할 강남구청에 소유차량압류촉탁의뢰(운영과-4668)
- '15. 06. 23 시립미술관압류(압류관리번호-1124-20150623-000145)
- '16. 10. 11 공제회비 납부 독촉고지(3차)
- '16. 11. 16 주소지 방문하여 체납 독촉고지서 등 전달(부재로 우편함)
- '17. 06. 09 주소지 방문하여 체납 독촉고지(4차) 전달
- '18. 04. 19 공제회비 납부 독촉고지(5차)
- '18. 06. 11 차량압류현황 및 주소지 조회
- '18. 06. 15 주소지 방문하여 체납 독촉고지(6차) 전달(부재로 우편함)
- '19. 04. 03 차량압류현황 및 주소지 조회 및 독촉고지(7차)
- '19. 04. 08 주소지 방문하여 체납 독촉고지(7차) 전달(부재로 우편함)
- 향후 지속적인 주소지 및 재산 조회, 방문 독촉고지를 하겠음.

※ 현 거주지 방문 및 재산조회 결과

- 체납자(강정희) 주민등록상 거주지조회, 재산조회, 차적조회와 현 주소지 방문조회 결과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실거주지에도 거주치 않는 것으로 보임. 현재 압류 상태인 체납자 자동차는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 압류되어있어 자동차(동산)를 강제 인도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재산조회결과 현재 다른 재산은 없고, 차적조회 결과 관공서에서 자동차 세금과 주정차과태료 등 100여건이 압류되어 있는 등 제3자에(대포차) 의해서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됨.

◆ 체납자 소유차량 확인

차 량 번 호	34모9672	최 초 등 록 일	2012. 5. 1
차 명	제네시스(GENESIS)	차 종	승용 대형
소 유 자	강 정 희	주 민 등 록 번 호	670809-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		
검사유효기간	'16. 6. 18 ~ '18. 6. 17	주 행 거 리	166,639km

◆ 체납자 소유차량 압류 등 현황관리('15. 6. 23 ~ 현재)

순위번호	압류기관	압류등록일	압류관리번호	비 고
1	현대캐피탈	'13.03.12	1118-2013-002988	
2	서울시 강북구청	'14.06.09	1124-20140609-000471	
3	고양도시관리공사	'14.09.18	1124-20140918-000120	
4	서울중앙지방법원	'15.06.12	1124-20150612-000134	
5	서울시립미술관	'15.06.23	1124-20150623-000145	압류
6	서울시 강남구청	'15.09.15	1124-20150918-000068	
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16.08.11	1124-20160811-000328	
8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16.09.22	1124-20160922-000013	
9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17.03.20	1124-20170406-000273	
10	서울시 관악구청 등 100건	'18.12.31		

〈공제회비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붙임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6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및 운용 의 객관성 부족	당초 목표 설정시 예산보다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 표를 조정하지 못 함으로 인 하여 성과지표로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목표치 설정의 예산변동에 따 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유연 한 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구입 평균 작품수 기준에 <u>예산증감분을 반영, 예산변동에 따라 조정가능한</u>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수정 하였으며, - 1점 평균 구입가를 상향조정 하여 최근 3년간 평균 구입 작품수의 70%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 소액다건 식 저가작품 구입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준 높은 작품 구 입으로 소장품의 질적 향상 가능토록 성과목표 설정 	서 울 시 립 미 술 관 (수집연구과)
47	성과만을 부각시킨 〈서울미디어시티비 엔날레2018〉 개최 결과 보고	사업의 결과 분석과 평가는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기 술하고, 분석하여야 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긍정성만 부각시킨 〈서울미디 어시티비엔날레 2018〉 개최 결과 보고는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차후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개최 결과보고 작 성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기술 하여, 성과의 계승과 함께 문 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설계단계에서 구축한 2019 시 투자심사 의뢰내역에 포함 된 상세계획을 사업 수행과정 에 적극 참고하여 목표설정과 달성의 과정을 가시화 함. - 사업결과 보고시 부정적 측면 또한 환류로 삼아 차년행사에 서 보완할 수 있는 기저 마련 - 저조한 관람객 달성률 극복을 위하여 서울시 전역을 활용한 비엔날레를 기획, 추진하여 더욱 다층적이고 다양한 다수 의 시민 관람객에게 행사가 노출될 수 있는 장을 형성하 는 계획 수립 	서 울 시 립 미 술 관 (전 시 과)